

장애인 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장애인 학대 상황을 발견했을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신고 112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도 신고 가능)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
- ※ 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상담전화 1577-5364)에서는 장애인 학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3항)

※ 2016년 6월 30일부터는 장애인학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직무상 관련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112) 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17년부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상세적군은 뒷면 참조)

장애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학대 유형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럴 경우, 경제적 착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의 잔액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경우
 - 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매주 소액을 인출하다가 며칠만에 거액이 인출되는 경우)
 -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형편없는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
 - 본인이 임금을 얼마 받는 지 모르고 있거나, 타인이 관리한다고 대답할 경우
- 유기·방임**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이럴 경우, 유기·방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약취, 락취, 염증, 욕창 등이 있는 경우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입기 등 신체처리가 안된 상태
 - 장애인의 건강이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경우
 -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사회서비스 연계를 거절하는 경우

- 신체적 폭력**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이럴 경우 신체적 폭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상처, 멍, 묵인 자국, 흉터가 있으나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상처, 멍, 묵인 자국이나 흉터, 출혈이 있는 경우
 -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위축할 때
 - 관절의 탈구나 붓기, 혹은 골절
- 성적폭력**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
▶ 이럴 경우 성적폭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할 때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 성기나 항문, 구강 주변에 상처나 출혈이 있을 때
 - 갑자기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과도한 자위행위를 할 때
- 정신·정서적 폭력**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이럴 경우, 정신·정서적 폭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낼 때
 - 약물을 꾸거나 수면장애가 있을 때
 - 갑작스럽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공격성을 보일 때
 -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소극적이고, 타인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때



신고의무자 직군		직군별 상세 유형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1-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3.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1-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보조인교육수료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치과위생사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신고의무자 직군	직군별 상세 유형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구급대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유치원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학원
	교습소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1급, 2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